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동 소유자(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)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도 말소등록(폐차)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82호, 2025.12.2. 공포, 2026. 6. 3. 시행)됨에 따라, 공동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1항제7호”를 “법 제13조제1항제7호·9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개월”을 “1개월 이내의 기간을, 법 제13조제12항제2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90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“법 제13조제1항제5호·제7호”를 “법 제13조제1항제5호·제7호·제9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(생략)	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“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· 9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<u>1개월</u>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1개월</u> 이내의 기간을, 법 제13조제12항제2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<u>90일</u> -----.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	⑨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본을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<u>법 제13조제1항제5호·제7호</u>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----- . ----- <u>법 제13조제1항제5호·제7호·제9호</u> ----- ----- -----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60